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가합1083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등]

전 문

원 고 A중중

피 고 B중중

변론 종결 2016. 3. 25.

판결 선고 2016. 5.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임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2007. 4. 26. 접수 제4778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39,5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3, 16 내지 18, 22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의 시조 D의 10세손 E(E, 이하 'E'이라 한다)의, 피고는 그 14세손 F(F, 이하 'F'이라 한다)의 각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그 자손들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종중이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등의 사정

남양주시 G 임야 3정 4단(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과 남양주시 H 임야 1정 3단 5무보는 1917. 10. 14. E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F의 후손이기도 한 I, J, K, L, M, N과 E의 후손이면서 F의 아버지 O의 후손인 P가 사정을 받았다.

다. E 및 F 등의 분묘의 이장

이 사건 분할 전 임야가 있는 남양주시 Q동 일대에서 E, F 등의 분묘가 조성되어있었다가 1900년경 그 일대가 새 능터로 지정됨에 따라 위 분묘 등이 타지로 이장되었는데, 이후 능터 지정이 철회되어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1914년 E의 분묘가 이장된 것을 시작으로 그 직계자손들인 R(11세, 1914년 이장), S(12세, 1914년 이장), O(13세, 1939년 이장), F(14세, 1924년 이장), T(15세, 1924년 이장), U(16세, 1924년 이장), V(17세, 1924년 이장), W(17세, 1924년 이장) 등의 분묘가 이장되었다.

라. I 등이 사정받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앞서 본 것과 같이 I 등이 사정받은 후 남양주시 X 임야 2정 5단 8무보(25,587㎡,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임야), 남양주시 Y 임야 6단 5무보(6,446㎡,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임야) 등으로 분할되었고, I의 후손인 Z은 1971. 10.5. 별지2 목록 기재 각 임야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6. 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해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로 Z의 주소지였던 '양주군 AA'가 기재되었다.

마. 조정의 성립

1) 피고는 2007. 1. 31. 원고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6611호로, "별지2목록 기재 각 임야는 원래 피고의 소유인데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소장 부분의 송달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위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준재심대상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소장 부분은 피고가 원고의 송달장소 및 대표자로 기재한 '남양주시 AB', '회장 AC'에게 송달되었으며, 2007. 4. 10. 원고의 대표자로 출석한 AC과 피고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임야에 관하여 2007. 2. 12.자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별지2 목록 기재 각 임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7. 4. 26. 접수 제47780호로 2007. 2. 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조정 성립 후 별지2 목록 기재 각 임야의 분할

1) 이 사건 조정 성립 후 남양주시 X 임야 25,587㎡(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임야)에서 2007. 5. 9. 남양주시 AD 임야 566㎡(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임야), 남양주시 AE임야 1,493㎡(a) 및 남양주시 AF 임야 257㎡(별지3 목록 제2항 기재 임야)가 분할되어 위 X 임야의 면적이 23,271㎡(b)로 되었다가, 2013. 6. 21. 다시 남양주시 AG 임야 223㎡가 분할되어, 최종적으로 남양주시 X 임야의

면적은 23,048㎡(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임야)가 되었다.

2) 그리고 남양주시 Y 임야 6,446㎡(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임야)에서 2007. 5. 9. 남양주시 AH 임야 559㎡(별지3 목록 제3항 기재 임야), 남양주시 AI 임야 52㎡(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임야, c)가 분할되어, 최종적으로 남양주시 Y 임야의 면적은 5,835㎡(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임야, @)가 되었다.

3) 또한 앞서 본 남양주시 AE 임야 1,493㎡(a)에서 2013. 6. 21. 남양주시 AJ 임야 417㎡와 남양주시 AK 임야 85㎡(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임야)가 분할되어 최종적으로 남양주시 AE 임야의 면적은 991㎡(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임야)가 되었다.

사. 별지3 목록 기재 각 임야에 관한 공공용지 협의취득과 피고 측의 토지보상금 등의 수령 피고는 경춘선 복선 전철 공사 부지로 편입된 별지3 목록 기재 각 임야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매도하고, 2008. 7. 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당시 피고의 회장이었던 AL과 그 종중원인 AM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2008. 7. 11. 위 각 임야의 매도에 따른 토지보상금으로 각 69,791,000원 합계 139,582,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AM는 2009. 9. 7.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위 각 임야에 설치된 분묘의 이장비용으로 17,260,000원을 지급받았다.

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의 소제기 및 취하

원고는 2011. 12. 28.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69534호로 남양주시X 임야 23,271㎡, 남양주시 Y 임야 5,835㎡, 남양주시 AE 임야 1,493㎡ 및 남양주시AI 임야 52㎡(위 바. 항의 a, b, c, d 임야를 의미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AC에 의하여 성립된 이 사건 조정에 따른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2. 8. 3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기판력이 있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에 의한 것으로 그 조정조서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말소등기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2나13508호로 항소하였다가 2012. 11. 1. 그 소를 취하하여 위 소송은 2012. 11. 23. 종결되었다.

자. AL, AM, AC에 대한 토지보상금 수령 관련 유죄판결

2007년경부터 2011. 10. 3.경까지 피고의 회장이었던 AL과 피고의 종중원인 AM 및 이 사건 조정에서 원고의 대표자로 행세했던 AC은, "피고인들(AL, AM, AC)은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별지2 목록 기재 각 임야의 일부(별지3 목록 기재 각 임야)가 경춘선 복선 전철 공사 부지로 편입되어 토지보상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위 각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토지보상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원고의 실제 대표자가 아닌 AC을 원고의 대표자로 기재하여 이 사건준재심대상의 소를 제기한 다음 이 사건 조정을 성립시켜 위 각 임야에 관하여 피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각 임야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방식으로 매도하여 피고인들이 위 각 임야의 정당한 토지보상금 수령권자라고 속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2008. 7. 11. 위 각 임야에 관한 토지보상금 합계 139,592,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2918호, 의정부지방법원 2014노417호, 대법원 2014도8877호).

차. 이 사건 조정에 관한 준재심 판결

1) 원고는 2013. 11. 11.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재가단32호로, 원고를 대표할 자격이 없는 AC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대표권 흠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준재심사유가 있어 이 사건 조정조서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조정의 당사자였던 'A종중'을 원고와 동일한 단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소를 각하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7347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5. 1. 30.

준재심의 소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정의 당사자였던 'A중중'은 원고와 동일한 단체이고, 원고의 대표자가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총회결의를 거치는 등 준재심의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준재심대상의 소에서의 피고의 청구(피고가 자신의 소유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임야를 원고에게 명의 신탁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므로, 위 각 임야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에 대하여는 위 각 임야가 피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조정조서를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해 대법원 2015다17951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7. 9. 상고를 기각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준재심 판결'이라 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에 관하여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69534호로 남양주시 X 임야 23,271㎡, 남양주시 Y 임야 5,835㎡, 남양주시 AE 임야 1,493㎡ 및 남양주시 AI 임야 52㎡(앞서 본 a, b, c, d 임야를 의미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위 각 임야 또는 위 각 임야로부터 분할된 별지1목록 기재 각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는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취하로 인하여 그 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는 후 소를 취하한 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486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69534호로 위 각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8. 31. 이 사건 조정조서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이상 위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는 그 판결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2012나13508호로 항소하였다가 2012. 11. 1. 그 소를 취하하여 위 소송은 2012. 11. 23. 종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는 2013. 11. 11. 의정부지방법원 2013재가단32호로 이 사건 조정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의 항소심법원은 2015. 1. 30. 위 조정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준재심 판결을 선고하여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정조서를 취소하는 이 사건 준재심 판결이 확정된 후 위 각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취하한 전소와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달리하여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된 별지2 목록 기재 각 임야에 관하여 구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6. 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해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AC과 사이에 성립된 이 사건 조정에 따라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7. 4. 26. 접수 제4778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조정조서는 이 사건 준재심 판결에 의해 취소된 사실, 별지2 목록 기재 각 임야는 여러 차례 분할 절차를 거쳐 그 중 일부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임야가 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1 목록 기재 각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임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7. 4.26. 접수 제477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원래 피고의 소유였는데, 이를 그 종중원인 1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사정을 받은 것임에도, 1의 후손인 Z이 이 사건 분할전 임야에서 분할된 별지2 목록 기재 각 임야에 관하여 임의로 원고의 명칭을 사용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임야에 관한 실제 소유자인 피고의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 주장이 이 사건 준재심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이 이 사건 준재심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

먼저 피고의 주장이 이 사건 준재심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따라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준재심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별지2 목록 기재 각 임야에 관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지, 그 기본이 된 위 각 임야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각 임야는 피고의 소유로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준재심 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등의 소유권자인지 여부

피고가 원래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그 종중원인 1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는 F 및 그 후손의 분묘뿐만 아니라 F의 위로 4대선조로서 원고의 중시조인 E과 그 후손인 R, S, O의 분묘가 존재하고, 위 각 분묘가 이장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E의 분묘가 가장 먼저 조성된 후 순차로 그 후손의 분묘가 이장된 사실, ②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사정명의인 중 I, J, K, L, M, N은 F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E의 후손이기도 하고, 특히 나머지 사정명의인 P는 F의 후손이 아니라 F의 아버지 O의 후손으로 피고의 종중원이 아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③ E의 후손들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1971년 이전부터 E의 묘제일인 음력 10월 10일에 시제를 지내고 대소사를 처리해온 사실, ④ I의 후손인 Z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임야를 종중 소유의 산으로 관리하다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Z이 관리하였던 위 각 임야 및 그 임야에 설치된 E과 그 후손인 R, S의 분묘는 1980년경 Z의 사망 후 그 아들인 AN이 관리하다가 1991년 AN의 사망 후에는 그 동생인 AL이 이를 관리하게 된 사실, ⑤ 원고는 1990년 음력 10월 10일에 E의 묘제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을 만들고 회장으로 AO를, 이사로 AL 등을 선출한 사실, ⑥ AL은 1992. 6.경 미금시장(현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원고를 위 각 임야의 소유자로 하여 원고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때 원고의 대표자를 AO가 아닌 Z의 장손자 AP(AN의 아들이고, AL의 조카이다)로, 원고의 주소를 AP의 주소인 '성남시수정구 AQ'로 기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AL은, 그 등록번호를 받기 위해 원고의 종중원 4명이 모여 AP를 회장으로 선출했다는 회의록을 작성해 제출했을 뿐, AP는 당시 원고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갑 제3호증의 13 참조), 특히 AL은 원고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때 위 5항과 같이 만들어진 원고의 규약을 제출한 사실(갑 제3호증의 ⑦ 참조), ⑦ 원고는 1998. 12.경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AL으로부터 위 각 임야에 관한 관리권 등을 넘겨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원고의 종합보고서에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임야가 원고의 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갑 제3호증의 ① 참조), ⑧ 원고는 1999. 3. 8. E의 아버지인 AR을 중시조로 하는 'AS종중'과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AS종중에서 원고를 대신하여 E 등의 분묘를 관리하기로 한 사실(갑 제3호증의 ⑧ 참조), ⑨ 원고는 2011. 11. 5.[음력 2011년 10월 10.일, 갑 제3호증의 6에 기재된 2011.10. 27.은 위 2011. 11. 5의 오기로 보인다(갑 제3호증의 15, 16 참조)]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AT을 회장으로 선출한 다음 피고 명의로 이전된 위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찾아오기 위한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원래 소유자로서 이를 I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임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7. 4. 26. 접수 제477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회장이었던 AL이 AM 등과 공모하여, 원고의 소유인 별지3 목록기재 각 임야가 피고의 소유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위 각임야에 관한 토지보상금 139,59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당시 피고의 대표자였던 AL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각 임야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가 입은 위 토지보상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의 회장이었던 AL이 그 종중원 AM 등과 공모하여, 원고의 실제 대표자가 아닌 AC을 원고의 대표자로 기재하여 이 사건 준재심대상의 소를 제기한 다음 이 사건조정을 성립시켜 원고 소유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각 임야에서 분할된 별지3 목록 기재 각 임야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협의취득 절차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매도하여 피고가 위 각 임야의 소유권자라고 믿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2008. 7. 11. 위 각 임야에 관한 토지보상금 합계 139,59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매매에 해당하고 그 효력은 당사자에 게만 미치므로, 무권리자로부터 협의취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는 그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등 참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무권리자인

피고로부터 별지3 목록 기재 각 임야를 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협의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는 위각 임야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AL 등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광우, 판사 손태원, 판사 박민지

1. 목록

1. 남양주시 X 임야 23,048m²
2. 남양주시 Y 임야 5,835m²
3. 남양주시 AE 임야 991m²
4. 남양주시 AI 임야 52m²
5. 남양주시 AK 임야 85m² (끝)

2. 목록

1. 남양주시 X 임야 2정 5단 8무보
2. 남양주시 Y 임야 6단 5무보 (끝)

3. 목록

1. 남양주시 AD 임야 566m²
2. 남양주시 AF 임야 257m²
3. 남양주시 AH 임야 559m² (끝)

